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0일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2025. 2. 11.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,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3일 부여(안 제16조제4항)
-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,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(안 제16조제5항)

-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변경(안 제16조제6항)
-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10일 연장하여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)로 조정(안 별표 5)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(안 별표 5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휴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구 분		내 용	세부내용	비 고
개정	육아시간	사용범위 확대	○ 5세 이하 →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○ 24개월 동안 사용 → 36개월 동안 사용	안 제16조 제5항
		시간외근무 명령가능	○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→ 모성보호시간 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(육아시간 문구 삭제)	안 제16조 제6항
	경조사 휴 가	휴가일수 확대	○ 배우자 출산휴가 : 10일(다태아 15일) → 20일(다태아 25일) ○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상(배우자 포함) : 1일 → 3일	안 별표 5
신설	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		○ 재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3일 부여	안 제16조 제4항

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운영 현황 (붙임 참조)

-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: 5개구 운영 중(2025. 5. 21.기준)
 - 노원구 : 3년이상 5년미만 재직자(3일)
 - 도봉구, 영등포구, 중랑구 : 1년이상 5년미만 재직자(3일)
 - 관악구 : 시보해제 공무원(1일) * 개정중
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